인권경영규정

제 정 2018.11.12. 개정(1) 2020.04.27. 개정(2) 2020.12.07.

제1장 총칙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한국주택금융공사(이하 "공사"라 한다)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공사의 <u>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공사 경영활동</u>과 관련된 행위에 적용한다. (개정 2020.12.07.)
- 제3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(개정 2020.12.07.)
 - 1. "인권"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·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.
 - 1의2. "인권침해행위"란 제1호에서 정한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하는 행위를 말한다.
 - 2. "인권경영"이란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서, 기업이 인권정책선언을 하고 인권실천·점검의무를 이행하며,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.
 - 3. "임직원"이란 공사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(사무직원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을 말한다.
 - 4. "이해관계자"란 공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정부, 협력사, 지역주민, 고객 등 공사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.
 - 5. "협력사"란 공사와 사업관계를 맺고 있는 회사로서, 자회사, 출자회사, 거래회사, 입주사, 고객사 등을 포함한다.

제2장 인권경영 일반원칙

- 제4조(고용상의 비차별) ① 공사는 인종, 종교, 장애, 성별, 학력, 나이, 신체적 조건, 출신 국가, 출신 지역,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직원의 고용, 승진, 교육 등에서 차별 대우를 하지 않는다.
 - ② 공사는 비정규직 직원을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는다.

- 제5조(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) ① 공사는 직원이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보장하며 노동조합에의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.
 - ② 공사는 직원 대표를 통해 단체교섭 할 권리를 보장한다.
 - ③ 공사는 직원 대표에게 노동조합 활동 수행에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제공한다.
- 제6조(임직원 인권 보호) 공사는 임직원의 인격권, 건강권, 휴식권 등 우호적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 인권보호 의무를 지닌다. (개정 2020.12.07.)
- **제7조(강제 및 아동노동 금지)** ① 공사는 직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강제노동을 금지 한다.
 - ② 공사가 합법적으로 연소자에게 노동을 시킬 경우에는 이들에게 교육기회의 보장과 안전에 대한 별도의 배려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공사는 15세 미만의 아동을 고용하여 노동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.
- 제8조(양성평등 및 모성보호 등) ① 공사는 채용, 승진 등에 있어서 성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<u>개선하며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.</u> (개정 2020.12.07.)
 - ② 공사는 임직원의 모성보호, 육아 및 일·가정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. (신설 2020.12.07.)

[제목개정 2020.12.07.]

- 제9조(산업안전보장) 공사는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산업안전 및 보건을 증진한다.
- 제10조(책임있는 협력사 관리) ① 공사는 모든 협력사에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며, 투명 하고 공정한 거래를 한다.
 - ② 공사는 <u>협력사가 공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</u>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. (개정 2020.12.07.)
- 제11조(현지주민의 인권 보호) 공사는 사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.
- 제12조(환경권 보장) 공사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,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하다.

- 제13조(고객의 인권 보호) 공사는 고객의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.
- 제14조(구제조치) 공사는 사업 활동 중 인권 침해를 발견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응하고 적극적으로 구제 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.

제3장 인권경영 체제

- 제15조(인권경영헌장) 공사는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하며, 임직원은 인권경영헌장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 파단 기준으로 삼고 실천한다.
- 제16조(인권경영계획 수립) ① 공사는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권경영 기본계획을 수립한다.
 - 1. 인권경영의 목표 및 기본방향
 - 2. 인권경영 추진과제 및 실행전략
 - 3. 인권영향평가 시행계획
 - 4. 그 밖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 -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.
- 제17조(인권경영 제도와 절차) 공사는 인권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인권경영 주관부서, 인권경영위원회, 인권실천·점검의무, 인권영향평가, 인권침해 구제 제도 등 필요한 제도와 절차를 마련한다.
- 제18조(인권경영 주관부서) 공사는 인권경영을 효율적으로 총괄 및 집행하기 위해 인권 경영을 담당하는 주관부서를 두고, 주관부서의 장은 제19조 각 호의 사항 포함 인권 경영 사무전반을 담당한다.
- 제19조(인권경영담당관) 인권경영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인권경영담당관으로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. (개정 2020.12.07.)
 - 1. 인권경영계획 수립 및 이행 총괄
 - 2. 인권영향평가 등 인권실천 · 점검의무의 계획 및 실시
 - 3.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접수 및 조사
 - 4. 인권경영위원회의 행정지원
 - 5. 그 밖에 인권경영과 관련한 업무총괄

- 제20조(인권교육) ① 공사는 모든 임직원의 인권 의식을 높이기 위한 인권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.
 - ② 공사는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이해관계자와 협력사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4장 인권경영위원회

- 제21조(설치 및 기능) ① 공사는 인권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인권경영위원회를 둔다.
 - ② 인권경영위원회는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. (개정 2020.04.27., 2020.12.07.)
 - 1. 인권경영 추진에 관한 중요계획 심의
 - 2. 인권경영 관련 중요정책 심의
 - 3. 인권경영 관련 내규의 제정 · 폐지 및 중요사항의 개정 심의
 - 4. 인권영향평가 결과의 심의 및 채택
 - 5.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구제조치, 재발방지 등에 관한 사항 심의
 - 6. 삭제 (2020.12.07.)
 - 7. 그 밖에 위원장이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해 심의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
- 제22조(구성) ① 인권경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인 이내의 내·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② 내부위원은 사장, 인사·노무담당 임원, 인권경영담당 임원, 노동조합 수석부위원 장으로 한다.
 - ③ 외부위원은 이해관계자를 대변하고 인권 전문성을 지닌 인권옹호자로서, 인권단체활동가, 대학교수, 변호사, 노무사, 공사 상품 이용자 등에서 4인 이내로 사장이 위촉하다.
 - ④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.
 - ⑤ 위원장은 사장으로 하고, 간사는 인권경영담당관으로 한다.
 -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인사·노무담당 임원, 인권경영담당 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23조(소집 및 회의) ① 인권경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
 - ② 인권경영위원회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개최한다.
 - ③ 인권경영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일시, 장소, 회의의 목적과 주요내용을 작성하여

- 회의 개최일 2영업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④ 인권경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-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에 의해 심의 또는 의결할 수 있다.
- ⑥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- 제24조(의견청취)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- 제25조(위원의 제척 등) ①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이 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장에게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.
 - ②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한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으로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.
 - ③ 제척사유 등에 해당하거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위원은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.

[제목개정 2020.12.07.]

- 제26조(비밀누설 금지) 인권경영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자는 인권경영위원회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.
- 제27조(위원의 위촉 해지)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의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.
 - 1.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
 - 2.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
 - 3.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
 - 4. 인권침해에 연루된 때
 - 5. 외부위원이 위촉 당시의 지위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
 - 6.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

제28조 삭제 (2020.00.00)

제5장 인권영향평가

제29조(인권영향평가) 공사는 인권실천 · 점검의무의 일환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.

- 제30조(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보고) ① 공사는 기관 운영, 특정 법규 제정과 개정, 정책이나 사업 등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대상으로 인권 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 - ② 인권경영 주관부서는 인권영향평가를 주관하며, 관련 자료를 각 부점에 요청할 수 있다.
 - ③ 공사는 인권영향평가를 외부 독립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.
 - ④ 인권경영담당관은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인권경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⑤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절차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다.

제6장 인권침해 구제

- 제31조(인권침해행위의 신고 및 접수) ① 인권침해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(이하 "신고자"라 한다)는 인권경영담당관에게 신고 할 수 있다. (개정 2020.12.07.)
 - ② 신고자는 [별지] "인권침해행위 신고서" 양식으로 신고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직접방문, 우편, 이메일, <u>팩스</u> 및 기타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을 통해 인권경영담당관에게 기명으로 신고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외부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하여 신고할 경우에는 익명으로 할 수 있다. (개정 2020.12.07.)
 - ③ 인권경영담당관은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접수하여야 한다. 다만, 신고내용이 객관적으로 명확하지 않거나 허위임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- ④ 신고 등 접수 및 처리에 관하여 다른 내규에 특별히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 (신설 2020.12.07.)
- 제32조(인권침해행위의 조사) ① 인권경영담당관은 <u>인권침해행위로 신고·접수된</u> 신고내용 용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자의 인적사항,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<u>확인하고, 인권침해여부를 조사하여야</u> 한다. 다만, 외부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하여 접수된 경우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. (개정 2020.12.07.)
 - ② 인권경영담당관은 신고사항에 대한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인 또는 임직원에게 출석 후 의견진술 등의 요구, 필요한 자료, 서류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.
 - ③ 인권경영담당관은 접수한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할 권한이 없거나, 조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신고자에게 국가인권위원회, 감사원, 수사기관 또는 금융위원회 등에 직접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거나, 신고자의 동의를 얻은 후 관

계기관으로 송부할 수 있다.

- ④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,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의뢰,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이 경우 「사고보고 및 직무관련 범죄 고발기준」을 준용할 수 있다.
- ⑤ 인권경영담당관은 추가 사실 여부 등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접수일 로부터 7일 이내에 감사담당 부서장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.

[제목개정 2020.12.07.]

[종전 제33조에서 이동, 종전 제32조는 제33조로 이동 (2020.12.07.)]

- 제33조(인권침해행위의 심의) ① 인권경영담당관은 조사 결과 인권침해행위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인권경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사건을 상정하여야 한다. 다만, 제기된 인권침해행위가 공사의 소관사항이 아닌 경우로 공사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해당 사건을 이관할 수 있다. (개정 2020.12.07.) ② 삭제 (2020.12.07.)
 - ③ 인권경영담당관은 모든 절차가 완료된 후 조치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[제목개정 2020.12.07.]

[종전 제32조에서 이동, 종전 제33조는 제32조로 이동 (2020.12.07.)]

- 제34조(신고의 취하) ① <u>신고자는 제31조제2항에 따른 신고방법 중 신고자가 편리한 방</u>법을 통해 신고를 취하할 수 있다. (개정 2020.12.07.)
 - ② 인권경영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가 취하된 경우에도 인권침해행위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.
- 제35조(종결처리 등) ① 인권경영담당관은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종결할 수 있다. (개정 2020.12.07.)
 - 1.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타당하지 않은 경우
 - 2.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
 - 3.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한 경우
 - 4. 신고자가 증빙자료 등에 대한 보완요구를 받은 후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
 - 5. 신고내용과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,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
 - 6. 신고의 취지가 그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
 - 7. 인권경영위원회가 심의를 완료한 사건을 새로운 증거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
 - 8. 그 밖에 신고내용이 인권침해행위와 관련이 없거나,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

경우

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종결한 사실을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.

[제목개정 2020.12.07.]

- 제36조(신고자의 신분보장) ① 인권경영위원회 위원 및 인권관련 직무 수행자는 제31조 제1항에 따른 신고자와 피해자, 피해내용 등 그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, 공사는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(개정 2020.12.07.)
 - ②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인지한 임직원은 그 사실을 타인에게 암시하거나 알려서는 아니 된다.
 - ③ 공사는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, 조사 결과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-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보고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위원장과 인권경영담당관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- 제37조(인권침해여부에 대한 상담)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규정 위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권경영담당관과 상담한 후 처리할 수 있다.
 -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제38조(시정과 조치) 공사는 인권침해 사실 및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하고, 고의 또는 과실로 인권침해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7장 보칙

제39조(기타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부 칙 (제 정)

이 규정은 2018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1)

이 규정은 2020년 04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<u>부 칙 (2)</u>

이 규정은 2020년 12월 07일부터 시행한다.

< 별지 >

인권침해행위 신고서

접수번호		접수일자		처리일자		처리기간				
신 고 자	성명 직업 (소속) 주소				주민등록는 (외국인등록 연락처					
교사그리	성명 소속 및 주소	직위(직급)			연락처					
피신고자 (신고대상)	구소 법인·단처 경우	등의	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							
※ 신고내용을 확인·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 여부						[] 동의 [] 부동	의			
신고취지 및 이유 신고내용	일시									
	장소									
	내용									
증거자료 목록								* 3	증거자료	: 첨부
비고										
위와 같이 ⁽ 한국주택				신고자			년	월	(서명 또	일 :는 인)

- 10 -